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		
배포 일시	2022. 6. 3.(금)	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4016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401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	

‘집단운송거부’ 는 해법이 아닙니다
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합니다.

- 정부와 대화 노력에도 집단운송거부 결정에 유감,
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6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**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** 촉구하며,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**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** 등을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

○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,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**물류수송에 차질**이 발생하고 **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**되고 있는 시점에서,

○ **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**는 국가의 **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**을 주면서 **국내경기를 위축**시킴은 물론,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**국가경제에 큰 피해**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다.

①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

□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**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”**, **“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”**, **“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”**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.

○ 먼저, 주요 요구사항인 **“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”**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, 운송사, 차주의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지난 **5월 30일**에 열린 **“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”**를 시작으로, 6월 초부터 **“안전운임 TF”**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.

□ 이와 함께,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펼쳐왔다.

○ (유류비 부담경감) **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**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**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**하고 있으며, **6월부터는 지원 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**하였다.

○ (소통협의체 운영) 또한,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**“국토부-화물연대 월례협의회”**, **“화물운수업계 협의체”**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.

○ 이처럼,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**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**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,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.

②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

□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, 차량 파손 등 **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**를 강행하는 경우, 경찰과 협조하여 **초기부터 법과 원칙**에 따라 **엄정히 대처할 계획**이다.

○ **무관용 원칙**에 따라 **끝까지 민·형사상 책임**을 묻고, 차량을 이용하여 **불법으로 교통방해**를 하거나 **운송방해**를 할 경우에는 **운전면허를 정지** 또는 **취소**하고,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**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**하는 등 **강력히 대응**할 계획이다.

③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 최소화

□ 정부는 경찰·해수부·산업부·국방부 등 **관계부처 합동**으로 **비상수송대책 본부**를 구성하여,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**신속 대응체계를 마련**할 예정이다.

* (해수부) 항만 장치능력 확보, (산업부)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, (국방부) 군위탁 차량 투입, (지자체)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, (물류업계) 긴급화물 사전수송,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

○ 또한, 부산항 등 **주요 항만**과 **주요 물류기지** 등을 대상으로 **비상수송대책**을 수립하여 **물류피해를 최소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- 화물연대의 **운송방해·점거**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·ICD·고속도로 요금소, 휴게소 등 **중요 물류거점**에는 **경찰력 사전 배치** 및 **112 순찰활동 강화**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,

-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, 지자체,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**군위탁 컨테이너 차량**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**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**할 방침이며,

- 필요 시 철도공사의 **컨테이너·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** 운행하고,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**운휴차량**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- 또한, **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**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**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**에 대해 **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**할 계획이다.

※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 : 044-201-4801～4805

□ 한편,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**집단운송거부 철회**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,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**명분없는 집단행동**에 동조하지 말고 **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**한다고 하면서,

○ 화물연대와 지금까지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것처럼, 앞으로도 **지속적인 소통**을 통해 **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**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·환불 계획

□ 통행료 면제

○ (면제기간) '22. 6. 7(화) 00:00 ~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

○ (면제구간) **고속도로 全구간** (민자고속도로 포함)

○ (대상차량) 국토부 지정 **대체수송차량**으로
식별표지 및 **통행료 면제확인증**을 발급받은 차량

○ (면제방법) **하이패스**는 정상 납부 후 **사후 환불**
* (선불카드) 사후 충전, (후불카드) 카드사 미청구
일반차로는 **즉시 면제** (식별표지 부착, 면제확인증 제시)

※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**식별표지**를 부착하고, **통행료 면제 확인증**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

□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

○ (발급장소)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**全 영업소** (367개소)

○ (발급시간) **09:00 ~ 18:00** (주말·공휴일 포함)

○ (발급방법) **자동차등록증** 및 **신분증** 지참 영업소(사무실) 방문
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(전산등록·출력)

□ 통행료 환불

○ (환불대상)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
*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

○ (환불시기)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

○ (환불절차)

안내문 발송	환불 신청	환불 처리
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	· (온 라 인) 홈페이지, 앱 · (오프라인) 영업소	계좌입금 또는 현금 환불

□ 문의처 :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

참고 2 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

□ **식별표지** :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

No. 예)1-23 (차량부착/게시용)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

○ **사용기간** : 2022. 6. 7. 00:00 ~ 정상화 시까지

○ **차량번호 :** _____

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

국토교통부장관 (인)

□ **면제확인증** :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

No.

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

○ **사용기간** : 2022. 6. 7. 00:00 ~ 정상화 시까지

○ **차량번호** : _____

○ **면제구간** : 모든 고속도로(재정·민자 고속도로)

○ **이용방법 :**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

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

국토교통부장관 (인)